
단원미술관 3관(콘텐츠관) 전시 진열장 제작·설치
과업지시서

2019. 4.



안산문화재단
ART - CULTURAL ENERGY



단원미술관
Danwon Art Museum

1. 사업개요

1. 사업명 : 단원미술관 3관(콘텐츠관) 전시 진열장 제작·설치

2. 사업 목적 : 단원미술관 3관(콘텐츠관) 전시실 내 전시 보존환경 개선을 위한 벽부형·독립형 전시 진열장 제작·설치

3. 사업 내용

- 위치 : 단원미술관(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) 3관(콘텐츠관) 2층 전시실
- 사업범위 : 벽부형 진열장 2개, 독립형 진열장 4개 제작·설치

4. 사업 기간 : 착수일로부터 60일

II. 과업 세부사항

1. 과업내용

가. 주요내용

- 전시 진열장(벽부형 2개, 독립형 4개) 제작·설치
- 기타 사업에 수반되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

2. 과업 수행 조건

-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과업의 수정·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계약 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·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,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.
- 과업에 대하여 도면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.
-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,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·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, 발주기관은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.

3. 과업지침

가. 과업 수행 기준

- 계약서, 계약 조건, 해당 과업지시서
-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및 도서

나. 과업 일반 사항

- 과업 착수 보고 시 포함된 참여 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교체할 수 없다.
- 과업 수행 시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유지·

보수·사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.

-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모든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 기관에 있으며, 사업자는 설치물 제작 시 특허권,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에 대한 문제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- 모든 시설, 장비,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,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-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당연히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공하고, 해석상 의문 사항 및 제외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.
- 사업자는 과업 완료시 각 품목의 사양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국내외 우수 관련 업체 또는 전문 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협조와 하도급·기술 협력 등을 통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.
-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 후,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.

다. 과업 수행 업무 보고

-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
 -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 전에 착수계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최종보고
 - 과업수행자는 구축공사 완료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, 발주기관에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하며,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.

4. 세부지침

가. 전시 진열장 사양

- 유형 : 1면 벽부장
- 규격 및 수량 : 10,000×1,200×3,300(mm)×1개,
9,000×1,200×3,300(mm)×1개
- 유형 : 4면 독립장
- 규격 및 수량 : 1,600×900×2,300(mm)×4개
- 조명 : 벽부장 - LED 평판조명(조도조절), 조명레일, LED 레일조명(조도조절, 줌기능, 전원스위치)
독립장 - LED 평판조명(조도조절), LED 스포트조명
- 유리 : 두께 12~13(mm), 저철분 접합유리
- 프레임 : S/Q-PIPE 50×50×1.4t
- 개폐방식 : 전동인출, 좌우슬라이딩
- 잠금장치 : 전동개폐장치

나. 전시 진열장 제작 지침

- 전시기능
 - 진열장 규격, 구조, 자재의 표준화를 통해 전시연출계획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.
 - 전시물의 형상, 구조, 크기, 재질을 고려한 디자인, 연출, 조명방식을 적절히 조화하여 연출효과를 극대화 한다.
 - 바닥면은 전시물 또는 보조전시대가 놓이는 면으로 판상재에 지정고급도 배지를 취부하여 마감한다.
 - 지정고급도배지는 전시효과를 고려하여 그 색상, 두께, 결을 선정한다.
- 방도기능
 - 방도성이 우수한 잠금장치를 사용하며 추후 개폐감지기, 유리진동감지기, 파쇄음감지기 등과 같은 감지센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.
- 밀폐기능
 - 충충, 이물질 등 외부 유해요소들의 침입이 예상되는 모든 틈새부에는 기밀유지부재를 사용하여 밀폐 구조를 갖도록 한다.

- 기밀유지부재는 중공을 포함한 형태의 것으로 원형복원력이 우수한 실리콘 재질을 사용한다.
- 전시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일일 공기 유동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밀폐 구조로 제작설치 한다.
- 기밀유지부재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무초산 실란트로 밀폐시공하나 추후 분해 및 재조립시 재시공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.
- 급격한 온도, 습도의 변화는 문화재의 형태변경, 강도저하, 변색, 변질과 같은 열화현상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진열공간 내부의 온·습도가 급변하지 않도록 제작해야 한다.

○ 열화방지 기능

- 밀폐구조의 구현으로 전시물의 물리적, 화학적, 생물학적 열화를 최소화한다.
- 진열장에 사용하는 접착제, 본딩제는 전시물에 화학적 열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, 완전 경화 시 진열장의 형태를 유지하는 구조물로서 안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

○ 유리

- 진열장에서의 유리는 평활도가 우수하며 흠집이 없어야 하며 투명유리 (투과율 98% 수준), 저철분유리, 접합유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해야 한다.
- 한국 공업규격 KS제품 또는 KS 제품의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.

○ 도난방지 시스템

- 진열장의 전시물은 전시기간 동안 도난,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므로 진열장 자체에 일정한 방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- 진열장 형태와 잠금장치의 구조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합한 잠금장치를 선정하여 사용한다(동일한 잠금장치 사용)

○ 하부장 및 장치의 구성 및 제작방침

- 전시부, 하부장, 장치부는 구성재의 하중 및 하부장 자체 하중을 바닥면에 안정적으로 분산시켜 버티는 기능을 하는 구조재와 외관상의 디자인을 고려한 마감재로 구성한다.
- 전시부와 접하는 프레임, 장치 등의 외관은 열처리 도장법으로 마감한다.
- 프레임은 구성상 하부장에 속하나 그 일부가 전시부와 접하는 면이 존재

하는 바 전시부 보존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유리와 유리, 유리 와 프레임의 접촉은 경화시 유해물질이 방출치 않는 것으로 충분한 내구성, 내습성, 나화학성이 있는 물성의 것을 사용토록 한다.

- U.V 본딩 작업시에는 외부공기의 유입방지를 위해 빈틈이 없을 것이며, 접촉면의 색상이 일정하며 불순물이 삼입되지 않도록 한다.
- 프레임은 유리끼움에 적합한 단면구조를 갖춘 것으로 가공성 및 내구성, 내부식성이 우수한 재질의 것으로 지정색 에폭시도장 마감토록 하고 기밀용 AIR TUBE GASKET 또는 SPONGE GASKET, BRUSH GASKET 을 취부할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한다.
- 구조재는 진열장의 전체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틀로 제작되어야 한다.
- 하부점검도어는 한지형 경첩을 사용하여 원활한 개폐가 가능토록 한다.

○ 조명장치

- 전시실과 진열장에 사용하는 조명장치에서 자외선, 열선을 차단하여 변색, 변질, 박리와 같은 열화현상을 방지토록 한다.
- 본 구매 설치에 사용되는 LED 조명은 반드시 안전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 (※ 안전인정 미등록 제품사용 절대 불가)
- 안정기의 열이 발생하지 않아 열에 의한 전시품 손상이 없어야 하고, 조명 열은 공기 유통로를 설치하여 조명장치부 외부로 원활히 배출토록 한다.

다. 유의 사항

- 과업에 반영될 재료 및 특수 재료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공인 기관에서 인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우수 재료를 선택한다.
- 과업은 인체 무해한 재료 및 안전성이 검증된 재료를 선택한다.
- 최종 마감재의 처리는 선처리 혹은 후처리 방염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한다.
- 사업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(납품)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공 도중 제출(납품)한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수정하여 작업을 해야 하고,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별도로 계산치 않는다.
- 도면에 표기된 단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, 적합한 축척을 반드시 기재한다.

- 납품 시 차후 부품 교체, 하자 보수 등 유지 관리에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제안한다.

라.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

-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 추가 제반경비 청구 없이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- 과업 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.
-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.
- 하자보증기간 중 발행한 하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,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.

5. 보안관련 수행지침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.
-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- 본 과업수행 중 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기타 인력 변경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과업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
- 기타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.
-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·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.
-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의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